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3호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이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 이유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 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ms13@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① (생 략)	제7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u>8.</u> (생 략)	<u>9.</u>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 구조 설비의 확충 개선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 선
-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 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서 명

연번	의원명	서명	비고
1	型 战型	chi	
2	32 8 2	3 Q W & J	
3	R 3/0	cy Ox	
4	mry		
5	子目看	he	
6	女人会	More	
7	- of 301 200	PA 1	
8	wh ey y	77	
9			
10			
11			
12			
13			
14			
15			